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69
----------	-------

발의연월일 : 2025. 7. 23.

발 의 자 : 이수진 · 김문수 · 송옥주
남인순 · 김병주 · 서영석
김선민 · 이건태 · 추미애
전종덕 · 서미화 · 백혜련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이는 기초연금으로 인한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여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5% 수준으로 확대하고(안 제3조제2항),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6년에는 10%, 2027년에는 5%, 2028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70”을 “75”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기초연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액의 감액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감액한다.

1. 2026년: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027년: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③·④ (생략)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75-----.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u>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u> 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u>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u> 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삭제> ② ----- -----기 초연금액----- ----- ----- ----- ----- ----- -----.
	③ -----

